

정 관 (전 문)

제정 1993.09.14
개정 1993.09.24
개정 1995.01.14
개정 1997.03.26
개정 1999.02.02
개정 1999.03.26
개정 2000.03.10
개정 2001.03.14
개정 2002.03.26
개정 2004.03.02
개정 2004.03.26
개정 2007.03.23
개정 2008.03.21
개정 2009.03.20
개정 2010.03.19
개정 2011.03.18
개정 2012.03.09
개정 2019.03.22
개정 2022.03.31
개정 2024.03.29
개정 2025.03.28
개정 2026.03.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와이티엔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YTN이라 표기한다.
(1993.09.14, 1999.02.02 개정)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1.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2.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및 공급
3. 문화 서비스업
4. 음반, 필름, 테이프 제작 판매업
5. 임대업
6. 창고, 운수업
7. 주차장업

8. 부동산임대업
 9. 공익사업
 10. 방송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11. 방송 및 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 감리사업
 12. 전망권 판매사업, 상품판매사업, 통신시설임대업, 정보통신사업
 13. 방송채널 사용사업
 1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15. 데이터 방송 사업
 16. 국제회의 기획 사업
 17. 전시 및 행사대행 사업
 18.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9. 옥외광고업
 20. 통신판매업
 21. 교육, 학원, 출판사업
 22. 광고사업 및 광고대행업, 상품중개업
 2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상담업 및 사무지원업
 24. 인터넷 방송 사업
 25. 디지털 정보 처리 및 전자상거래·전자금융업 사업
 26.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판매·저작권관리
 27.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2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9.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무
 30.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31. 뉴미디어 및 특수콘텐츠 제작업 및 그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업
 32. <2025.03.28. 삭제>
 33.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34. 인터넷경매 및 상품중개업
 35. 모바일 쿠폰 개발 및 공급업
 36.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중개, 거래 및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사업
 37.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
 38.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 사업
 39.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40.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41.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1995.01.14, 1999.03.26, 2000.03.10, 2007.03.23, 2010.03.19, 2011.03.18, 2022.03.31, 2024.03.29, 2025.03.28. 개정)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사 등의 설치)

제1항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항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및 지국을 국내외에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tn.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1999.02.02, 2004.03.26, 2010.03.19 개정)

제 2 장 주식과 사채

제 5 조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육천만(260,000,000) 주로 한다.

(1997.03.26, 2001.03.14, 2004.03.02 개정)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천(1,000) 원으로 한다.

(2001.03.14, 2004.03.02 개정)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백오십만(1,500,000, 액면가 10,000원) 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제1항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25.03.28. 개정)

제2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3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각 종류주식은 각각 제5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 8 조의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한다)은 회사의 이익의 배당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2025.03.28. 신설)

제2항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25.03.28. 신설)

제3항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4항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발행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누적적 종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 8 조의 3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2항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종류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3항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는 발행시 법령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 상장 유지, 주주 보호, 경영환경 안정등 기타 경영상 이유를 고려하여 전환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환권의 행사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없는 경우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5.03.28. 신설)

제4항 종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5.03.28. 신설)

제5항 주주 또는 회사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본 회사는 종류주식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교부한다. 단, 본 회사는 조정 후 전환비율이 종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5.03.28. 신설)

제6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 8 조의 4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2항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

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
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25.03.28. 신설)

제3항 종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누적적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25.03.28. 신설)
2.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제4항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
식 및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
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
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2025.03.28. 신설)

제5항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
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2025.03.28. 신설)

제6항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가 종류주식 발행시 전환권을 부가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
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7항 본 회사는 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
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 8 조의 5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 본 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
주식”이라 한다)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초과한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허용되는 한도 범
위 내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2항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모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모든 안건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5.03.28. 신설)

제3항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 전부 또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일부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해임 (2025.03.28. 신설)
2. 정관변경 (2025.03.28. 신설)

3. 자본금변경 (2025.03.28. 신설)
4. 이익배당 (2025.03.28. 신설)
5. 합병·분할·분할합병 (2025.03.28. 신설)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025.03.28. 신설)
7. 중요한 영업양수도 (2025.03.28. 신설)
8. 사실상 중요한 영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자산 처분 (2025.03.28. 신설)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2025.03.28. 신설)
10. 회사해산 (2025.03.28. 신설)

제4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 9 조 <2019.03.22. 삭제>

제 9조의 2 (주식 등의 전자 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2019.03.22 신설)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25.03.28. 개정)

1. <2009.03.20 삭제>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9.03.20 개정)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2009.03.20., 2025.03.28 개정)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03.09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03.09. 신설)

6.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5.03.28. 신설)

제3항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999.02.02, 2000.03.10, 2012.03.09 개정)

제4항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2.03.09. 신설, 2025.03.28. 개정)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025.03.28. 신설)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본 회사는 임직원 및 관계회사(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03.28. 신설)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5.03.28. 신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의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은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25.03.28. 신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의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은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25.03.28. 신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2025.03.28. 신설)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025.03.28. 신설)

제5항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025.03.28. 신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025.03.28. 신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2025.03.28. 신설)

제6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5.03.28. 신설)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8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 퇴직한 경우 (2025.03.28. 신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025.03.28. 신설)
3. 당해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025.03.28. 신설)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5.03.28. 신설)

제 10 조의 4 (주식의 소각·보유·처분)

제1항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2012.03.09. 2025.03.28. 2026. 3. 27. 개정)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항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0.03.19 개정)

제3항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

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03.22 개정)

제4항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
에 따른다. (2000.03.10, 2009.03.20, 2010.03.19 개정)

제 12 조 <2019.03.22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 본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
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001.03.14 개정)

제2항 본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
를 행사하게 한다.

제3항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
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
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
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009.03.20, 2019.03.22 개정)

제 13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001.03.14. 개정)

제 13 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2025.03.28.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6. 회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국내의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등의 자본참여
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5.03.28. 신설)
- 제2항**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3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사채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4항**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5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 13 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1항**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6. 회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국내의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5.03.28. 신설)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5.03.28. 신설)
- 제2항**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025.03.28. 신설)
- 제3항**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25.03.28. 신설)
- 제4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5항**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 13 조의 5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03.09. 신설)

제 13 조의 6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채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 13 조의 7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준용)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03.28. 신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 (소집 시기)

제1항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제2항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권자)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소집 통지 및 공고)

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03.20., 2010.03.19 개정)

제2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09.03.20 개정)

제3항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03.10, 2004.03.26, 2009.03.20 개정)

제4항 본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5.03.28 개정)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장)

제1항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01.03.14 개정)

제 20 조 (주주의 의결권)

제1항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항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2.03.09 개정)

제2항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00.03.10 개정)

제 24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00.03.10 개정)

제 4 장 이사, 이사회

제 25 조 (이사의 수)

제1항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999.02.02, 2009.03.20, 2026.03.27 개정)

제2항 <2025.03.28. 삭제>

제 26 조 (이사의 선임)

제1항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5.03.28 개정)

제2항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10.03.19 신설)

제3항 <2025.03.28. 삭제>

제4항 <2025.03.28. 삭제>

제 27 조 (이사의 임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각 이사별로 주주총회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02.03.26., 2025.03.28 개정)

제2항 <2025.03.28. 삭제>

제 28 조 (이사의 보선) (2025.03.28 개정)

제1항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2025.03.28 개정)

제2항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선하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999.02.02 개정)

제 29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1항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1명을 선임한다.

제2항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하는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999.02.02. 개정)

제3항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비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제4항 <2025.03.28. 삭제>

제5항 본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03.14., 2025.03.28. 개정)

제 30 조 (이사의 직무)

제1항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1999.02.02, 2001.03.14. 개정)

제 30 조의 2 (이사의 의무)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5.03.28. 개정)

제 30 조의 3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3.09., 2026.03.27 ,개정)

제 31 조 <2025.03.28. 삭제>

제 32 조 <2025.03.28. 삭제>

제 33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1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항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8.03.21., 2025.03.28 개정)

제 34 조 (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012.03.09 개정)

제2항 이사회 의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항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제4항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03.09 신설)

제 35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00.03.10., 2025.03.28. 개정)

제 35 조의 2 (위원회)

제1항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2025.03.28. 신설)

1. 감사위원회 (2025.03.28. 신설)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2025.03.28. 신설)

제2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25.03.28. 신설)

제 36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제2항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001.03.14 2025.03.28. 개정)

제 37 조 <2026.03.27. 삭제>

제 38 조 (자문위원회)

본 회사는 회사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25.03.28. 신설)

제2항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25.03.28. 신설)

제3항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제4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 제5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6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2025.03.28. 신설)
- 제7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 제8항**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 제9항**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5.03.28., 2026.03.27. 개정)

제 38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025.03.28. 신설)
- 제2항**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3항**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4항**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5항**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 제6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25.03.28. 신설)
- 제7항**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025.03.28. 신설)
- 제8항**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2025.03.28. 신설)
- 제9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25.03.28. 신설)

제 38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25.03.28. 신설)

제 5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1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03.28. 개정)

제3항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03.28. 개정)

제4항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2025.03.28. 개정)

제7항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항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2.03.09 개정)

제 40 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0.03.19 신설, 2019.03.22., 2025.03.28 개정)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처분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이익 준비금
3. 기타의 법정적립금
4. 배당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03.09 개정)

제2항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12.03.09 신설)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기 타

제 44 조 (창업비)

설립준비에 따른 비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165,777,450원으로 한다.

제 45 조(상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46 조 (규 정)

이사회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7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의 설립 발기인들의 주소와 성명은 본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하고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1993년 9월 14일

발기인	(주)연합통신 대표이사 사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현 소 환
발기인	(주)쌍방울 대표이사 사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9-4	신 계 균
발기인	제일산업(주) 대표이사 사 장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562-3	장 세 헌
발기인	한국관광공사 사 장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지 연 태
발기인	(주) 한국상업은행 은 행 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정 지 태
발기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부속민중병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현 승 중
발기인	(주) 전남일보 대표이사 사 장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00-5	이 정 일
발기인	성원토건(합자) 공동대표사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3-4	조 철 주 김 창 현
발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9-13	장 규 찬 벽산빌라 202호
발기인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사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이 금 기
발기인	한림제약(주) 대표이사 사 장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210-1	김 재 윤
발기인	(주)보성주택 대표이사 사 장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4가 405-3	김 상 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액면분할 및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3조의5, 제30조의3, 제31조 제3항 중 제30조의3을 준용하는 부분,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제1항 중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부분, 제34조 제4항, 제40조 및 제4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